

신탁계약 정정내용

1. 정정대상 : 멀티에셋차이나스페셜A주 사모증권투자신탁 제H-1호[주식혼합]
2. 변경일 : 2016.9.7
3. 변경사유
 - 환매 대금 지급일 변경
 -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조항 추가
4. 변경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		
제26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 생략 ② 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<u>환매를 청구한 날</u> 부터 제8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단, 해당 투자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~⑤ 생략	① 현행과 같음 ② 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<u>환매를 청구한 날</u> 부터 제7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)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단, 해당 투자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~⑤ 생략
제27조(환매연기)	①~⑥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	①~⑥ 생략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<p>날의 <u>6영업일 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다만, 운용 전환일 이후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u></p>	<p>날의 <u>5영업일 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다만, 운용 전환일 이후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u></p>
제 7장 보수 및 수수료 등		
<p>제36조의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</p>	<p><신 설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 중 하나라도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70%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"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</p>
제 10 장 보칙		
<p>부 칙</p>	<p><신 설></p>	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<u>2016년 9월 7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